

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

의안 번호	282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2월 2일

발의자 : 정병용 의원

1. 폐지이유

- 가. 본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및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리를 효율화하고 시설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,
- 나.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자체감사계획의 수립·실시) 및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, 제11조, 「하남시 감사 규칙」에 따라 감사를 진행할 수 있어 법 규정의 중복이 존재함.
- 다. 또한 정부합동감사, 경기도 감사 등 상급 기관의 중복감사로 소관부서와 시설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」 폐지

3. 참고사항

- 가. 폐지조례안 : 덧붙임
- 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- 라. 입법예고 결과

○ 입법예고기간 : 2024. 2. 8. ~ 2. 13.

○ 의견 내용 : 입법예고 중

마. 부서의견(법무감사관)

○ 상위법령 및 「하남시 감사규칙」에 따라 감사를 진행할 수 있어 중복된 조례로 판단됨. 이에 중복된 조례를 폐지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 및 규칙에서 규정하는 특정감사¹⁾를 실시하여 감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1) 특정감사 : 특정한 업무·사업·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

하남시 조례 제 호

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

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

제19조(자체감사계획의 수립·실시)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하는 자체감사의 종류, 감사계획의 수립,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0조(자체감사의 종류)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 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.

1. 종합감사: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·주임무 및 조직·인사·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·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
2. 특정감사: 특정한 업무·사업·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
3. 재무감사: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
4. 성과감사: 특정한 정책·사업·조직·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·능률성·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
5. 복무감사: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, 비위(非違) 사실,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

제11조(감사계획의 수립) ① 감사기구의 장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감사사항
2.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
3.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
4. 감사의 범위
5.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
6.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

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